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#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정상교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
- 실무위원회(문화·체육·경제·농업 등)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- 남북교류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20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

하고(현재 15명 이내 → 개정 25명 이내) 교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※ 충청남도: 30명, 강원도:20명, 전라북도:20명, 경상남도:20명

- 남북교류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교류를 주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